

# 建築物의 建築抑制

政府는 73. 7月 12日부터 不要不急한 建築物의 建築抑制를 実施해 오고 있는바, 国家資源의 보다円滑한 需給을 為하여 3月 5日부터 同 建築抑制를 다음과 같이 拡大 実施토록 하였다.

## 対象建築物 및 適用地域

現 行	拡 大	備 考
<p>1. 対象 建築物 .</p> <p>가) 公共建築物</p> <p>1) 学校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庁舎</p> <p>2) 政府投資機関 및 銀行의 事務室用 建築物</p> <p>3) 政府에서 認可한 公益法人의 事務室用 建築物</p> <p>나) 民間 建築物</p> <p>1) 各種 興行場 (劇場, 映画館) (畔, 캐마레 料亭)</p> <p>2) 奢侈性浴場, 集会場, 娯樂場, 展示場, 百貨店, 觀覽施設.</p> <p>3) 延面積 100坪 以上の 住宅</p> <p>4) 四層以上의 事務室用 建築物</p> <p>2. 適用 地域</p> <p>人口 10万以上의 都市(22個都市)</p> <p>다만 特定地区 開發促進에 関한 臨時措置法의 適用을 받는 区域 및 特定街 区整備 地区는 除外함.</p>	<p>가) 1) 左同</p> <p>2) 左同</p> <p>3) 左同</p> <p>나)</p> <p>1) 左同</p> <p>2) 左同</p> <p>3) 延面積 50坪以上의 住宅 (但, 아파트는 世帶當 40坪 以上)</p> <p>4) 左同</p>	<p>公共機關 및 国營企業体地方移転計劃에 依하여 移転建築하는 建築物과 外国人 또는 外国人 合作投資業體가 建築하는 建築物은 建築許可抑制對象에서 除外함.</p>

## 特定街区 및 각開發区域 決定 現況

## 억제 대상 건축물 및 적용 지역표

번호	지구별	면적( )	구분	결정일
1	동승지구		특정가구	73.8. 1
2	이화지구(서울문리대 법대)	(46,200)평 154,000M <sup>2</sup>	"	"
3	울지로5,6가지구(서울음대)	(21,000) 70,000	"	"
4	용도지구(서울사대)	(32,400) 108,000	"	"
5	반도지구(반도호텔)	(16,800)		
6	금문도지구	57,000	"	73.9. 6
7	청량지구(중앙공무원교육원)	(27,600) 92,000	"	"
8	연건지구(서울미래)	(12,300) 41,000	"	"
9	도림지구(종합청사후편)	(39,300) 130,000	특정가구 재개발	"
10	석선지구(시민회관후편)	( 9,000) 30,000	"	"
11	서린지구(서린동)	(15,600) 52,000	"	"
12	무교지구(무교동)	(14,700) 49,000	"	"
13	다동지구(다동)	(17,700) 59,000	"	"
14	서울역 - 서대문지구(의주로)	(30,000) 99,957	"	"
15	태평로 2 가지구(중앙산업 구 대한일보사)	( 9,500) 31,400	"	"
16	남대문로 3 가지구(남대문 시장)	( 2,800) 9,400	특정가구 재개발	73.9. 6
17	남창지구(도큐호텔 일)	( 4,500) 14,850	"	"
18	울지로 1 가지구(반도호텔 앞)	( 6,600) 21,860	"	"
19	소공지구(서울시청 광장앞)	( 4,000) 13,220	"	"
20	장교지구(3.1 고가도로 양측)	(13,300) 43,900	"	"
21	영동지구	(9,594,000) 31,660,200	"	"
	계	(9,917,300) 32,736,781		73.6. 27

현행	확대	비고
1. 대상 건축물		공공기관 및 국영
가) 공공 건축물	가)	기업체지방이전계획에 의하여 이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 좌측	건축하는 건축물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 합작 투자업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예제에서 제외함
2) 정부투작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물	2) 좌측	
3) 정부에서 허가한 공익법인의 사무실 실용 건축물	3) 좌측	
나) 민간 건축물	나)	
1) 각종 흥행장(극장 영화관 빠카 바레 요정)	1) 좌측	
2) 사치성욕탕 집회장 오락장 전시장 백화점 관람시설	2) 좌측	
3) 연면적 100평 이상의 주택	3) 연면적 50평 이상의 단독주택	
	(단 아파트는 세대당 40평 이상)	
	4) 4층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4) 좌측
2. 적용 지역		
인구 10만이상의 도시 (22개 도시 다만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 및 특정 가구 정비지구는 제외함)	전국 다만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 및 특정 가구 정비지구는 제외함.	

특정가구 및 각 개발구역내에서의 건축은 억제대상에서 제외 됨